
2017년 18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7. 12.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7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7.12.18.(월) 17:00 ~ 18:20
-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안희철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직권심의 3건
 - (2017-58)2016년 환자안전사건 분석 결과 보고
 - (2017-59)고장유형분석(FMEA) 결과 보고
 - (2017-60)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5과목) 문항별 정답률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보류
 - 기각
 - 인용

【 의안번호 2017-58~59 직권심의 】

안건명

- 2016년 환자안전사건 분석 결과보고(2017-58)
- 고장유형분석(FMEA) 결과보고(2017-59)

〈○○○ 위원〉

-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송시강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직권심의 3건입니다.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각 주심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의위원 7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 1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제2017-58호, 59호 서북병원 간호부 소관 직권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서북병원 QI실 ○○○입니다.

<○○○ 실장>

- 안녕하세요? 저는 서북병원의 QI실장을 맡고 있는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서북병원 간호부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58, 59호 서북병원 간호부 소관 직권심의 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환자안전사건 분석결과보고 등 안전사건 관련 결재문서 2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주관부서에서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자료,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심의회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실장>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의 주심으로 58호는 ○○○ 위원님이시고, 59호가 ○○○ 위원님이시죠?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송시강입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른 자율보고라고 하는 그 문건과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환자안전사건 분석결과보고는 별개의 문건이죠?

<○○○ 실장>

○ 원래 우리가 환자안전법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자안전사고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결국에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의 자율 보고로 하고 있고, 환자안전법 상에는 우리가 그 보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 제공된 자료, 법령도 보고 환자안전법 운영매뉴얼도 봤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담당자, 책임자가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석보고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있었던 보고들을 정리한 것 아닙니까?

〈○○○ 실장〉

- 저희가 분기마다 분석을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서북병원이라는 단일한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을 조합해 보면 그 환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환자가 외상인지, 아니면 휠체어 바운드인지, 아니면 수면장애가 있었는지, 그 내용 자체는 추후 우리 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분석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이 환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 위원〉

- 제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공개해서 좋다 나쁘다를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안전법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제공하는 문서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죠. 그 양식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고가 생겼을 때마다 보고하는 문건이고, 그렇죠?

〈○○○ 실장〉

- 네.

〈○○○ 위원〉

- 그런데 이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된 ‘환자안전사건 분석결과보고’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된 채로 1년 동안 낙상사고가 몇 번 있었는지, 의료사고가 몇 번 있었는지의 통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 주무관〉

- 그런데 이 부분이 통계를 넘어서 그 사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실장〉

- 만약에 통계만 나온다고 하면 개략적으로 ‘근접오류는 몇 건 있었다. 위해사건은 몇 번 있었다.’ 정도의 정보이면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에 내용에 보면 몇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디테일하게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네, 사건내용에 대한 것은 나오나, 이 보고서만 봐서는 사실 개인정보는 삭제된 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는 것은 법상 자율보고 대상과 일단 별개의 문건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 지금 거부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법령은 엄격한 형식적인 의미의 자율보고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서 관리하고 있고, ‘보고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대상이 되는 문건이 아니라 법령에 있는 자율보고라고 하는 문서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서 지금 거부사유로 ‘자율보고에 대해서 환자안전법에서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못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공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법령에 딱 정합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만약에 공개거부 사유가 딱 맞지 않다고 하게 되면 적합한 공개 거부사유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병원 감독에 대한 것이니까, ‘감사나 감독이나 이런 것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정도 사유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

니까?

〈○○○ 실장〉

- 우리 병원이 의료기관이다보니 환자정보에 대한 노출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진료를 보는 의사들한테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환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병원 내 공개된 장소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게끔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상으로 비밀보장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보고자가 실제적으로 책임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그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보면 이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보고를 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안전법상 자율보고 공개금지에 의해서 공개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보공개법 9조1항1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때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의 일반적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서가 1호의 자율보고 형식에 의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가 주목했던 것은 9조1항5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시 이러한 전반적인 자율점검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검사 감독 체계와 그 취지에 비추어보건대 이것은 공개할 경우 상당한 업무수

행에 지장이 있다라고 봅니다.

- 다음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는 삭제된 상태에 있지만 결국 환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식별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이는 제6호, 개인정보에 해당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최초에 공개거부하실 때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호 사유로 거부하셨는데 저는 1호보다는 오히려 5호와 6호를 결합해서 거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계속 확인차 여쭙았던 것입니다.

〈○○○ 위원〉

- 청구자 여기에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십니까? 만일 사고의 당사자일 경우에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정보를 청구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실장〉

- 당사자는 아닙니다. 만약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의료기관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에 한해서는 그 법령으로 정해진 선에서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본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고, 의료기록도 원래는 그 환자 자체에 대해서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요즘에는 심지어 직계가족,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진료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아무리 봐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을 것 같은데,

<○○○ 실장>

○ 아닙니다.

<○○○ 위원>

○ 어떤 부분을 보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 실장>

○ 예를 들어 낙상이나 화상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서 그 대상자들나 보호자 분이 보았을 때 본인 사건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환자리스트를 뽑아 와서 비교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볼 때 이것이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미 비공개가 된 정보들과 그 비공개된 정보들이 공개로 바뀌어서 결합하지 않는 이상 2015년 화상 1명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실장>

○ 그런데 이것을 환자나 보호자가 봤다고 했을 때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 사람들은 이것이 공개되어지든 말든 화상 1명이 자기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만 알 뿐이지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 화상 1명이 누구인지 특정하거나 식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 실장>

○ 그런데 의료기관 내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식당에서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저도 의료법 관련해서는 알죠. 제 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건만으로 누가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시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이것이 1호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자율보고에 대한 문건은 아니어서 만약에 비공개를 한다면 다른 호로 비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또 하나는 6호에 의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6호를 적용하려면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서 특정인이 식별이 가능하면 6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서 식별 가능한 정보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쭙본 겁니다.
-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병원의 업무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 실장〉

- 보고자들이 공개로 인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겠죠. 저는 사실 QI를 맡고 있는 실장으로 병원 직원들한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도 보고를 많이 유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고를 많이 한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만약 이 통계가 수록된 문건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발열 12건이 있었는데 그 중 본인이 자율보고한 것이 3건이었을 경우, 보고자 입장에서는 ‘아, 이 발열 12건 중에 내가 보고한 것은 3건이구나.’ 그 정도 밖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치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병원에 미치는 업무상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쭙보고 싶은 겁니다.

<○○○ 주무관>

- 그런 통계치도 직원들의 자율보고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외부로 공개된다는 것이라면 사실 직원들은 보고를 한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이 내부적으로 또 발생되어서 보고를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 이런 자율보고시스템을 병원 자체에서 운영한 것은 우리가 의료사고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병원 자체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가 점점 꺾이게 될 수 있고, 자율보고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 위원>

- 이런 정보가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면 그것 자체로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 실장>

-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환자안전사건 분석사항 중 우리 분석만 공개되고 이슈가 될 경우 자율보고를 어떻게 유도하겠습니까?

〈○○○ 위원〉

- 당연히 저도 자율보고체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병원의 사고실적은 국민들이 병원에 관해서 알권리를 충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하시려고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 실장〉

- 그렇다면 우리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동시에 다 공개해야할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시립병원이라는 사항 때문에 우리 병원 사고현황만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 위원〉

- 사실 병원에서 보고를 하게 하고 예방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보고를 많이 하는 곳이 사고가 많은 곳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 실장〉

- 그렇죠.

〈○○○ 위원〉

- 오히려 보고를 열심히 한 것인데 그렇게 오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의료기관 단위는 아니더라도 자율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전체적인 통계는 공개가 됩니까?

〈○○○ 실장〉

-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 아직은 아니고 지금은 시스템을 열심히 쓰라고 장려하는 상태 정도인 것이죠?

〈○○○ 실장〉

○ 네.

〈○○○ 주무관〉

○ 이 법이 작년 7월에 시행이 된 것이라서 이제 첫걸음을 떼는 상황입니다.

〈○○○ 실장〉

○ 만약에 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전체통계를 공개하는 추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시기이지 의료기관을 공개하라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정리를 해 보면 원래 비공개사유인 1호에 따라서 계속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모으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비공개사유를 새로 정할지, 그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먼저 공개, 비공개를 나누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은 공개냐 비공개냐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비공개 의견을 주셨을 때는 몇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 이 두 가지 의견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호보다는 5호와 6호 사유에 의해서 비공개

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 위원님은 비공개 의견이시고, 5호, 6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신 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죠.

<○○○ 위원>

- 저는 공개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정보가 일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저는 공개되어야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병원과 비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일반병원들과의 비교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자율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또 하나는 이런 단순한 통계치가 공개된다고 해서 자율보고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율보고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공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입니다.

<○○○ 위원>

- 저는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반영해서 환자안전법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면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래 얘기한 법령상 비

밀 비공개 여기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

○ 오늘 참 다양하게 나오네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저는 사실 통계 자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병원의 얘기들이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분리해서 문건이 작성된다면 전체통계는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실장>

○ 그러니까 그 통계라는 것이 단순히 건만 딱 나오는,

<○○○ 위원>

○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일단 1호를 보면 환자안전법 17조 조항의 해석상 1호로 비공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자율보고한 원문서를 2차로 가공한 정보를 가지고 이 조항을 적용해서 비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가를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이것을 비공개해야 한다면 5호 사유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다른 의료정보도 이번 건이 선례가 되어서 ‘선의를 가지고

수집, 보고하는 통계자료이고, 공개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5호의 사유에 계속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서북병원이나 말씀하시는 바를 믿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 둘씩 비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공개될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서 저는 공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동수인데 어떻게 합니까?

<간사>

○ 직권심의 건이라 공개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향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정해보자는 의미가 큼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의결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간사>

○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것이죠.

<○○○ 위원>

○ 그러면 결론을 의사봉을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 겁니까?

<간사>

○ 보류죠.

〈○○○ 위원〉

-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제2017-58호는 참석위원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비공개 의견이시고요, 두 분이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수공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하고 또 미묘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2017-58호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부〉

- 네.

〈○○○ 위원〉

- 제2017-58호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59호도 유사 사안인데요, 의견이 다 같으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은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결론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 사항은 회의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 측면보다 오히려 의료진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회의자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침에 대한 지식부족’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으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이지도 않고 민감한 내용을 담은 것은 응당 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그리고 이 부분은 의료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과연 직무수행의 수준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저는 비공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결국에는 5호와 6호,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런데 이분은 고장유형분석 결과보고 3차를 청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청구문서 제목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어떻게 하죠?

<간사>

- 정보소통광장에 문서목록이 있으니까요.

<○○○ 위원>

- ‘잠재적’ 오류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오류가 발생한 건은 아닙니까?

<○○○ 실장>

-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오류들을 모아 가지고 분석한 것이죠.

<○○○ 위원>

- 이런 오류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이 된 겁니까?

〈○○○ 실장〉

- 이것이 다 본인들의 오류사항을 보고하신 겁니다.

〈○○○ 위원〉

- 사실 사고가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적이 있다.

〈○○○ 위원〉

- 이런 것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 실장〉

- 사실 환자안전 분석이라는 것이 이것을 모아서 시스템을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 직원들이 정말 보고 안 할 것 같고, 보고를 하라고 설득시키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안전 분석 중에서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 QI실장 입장에서는 보고를 많이 해야지만 그 보고를 분석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병원의 ‘낙상위험’ 안내문은 어디에다가 붙일지, 밑에 안 넘어지게 발판을 어디에다가 깔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 주무관〉

- 이 고장유형이라는 것이 환자한테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적용되기 전에 할 뻔했던 사건을 자율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직원들의 자율보고에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 위원〉

- 저는 현재 상황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환자안전과 관련된 통계가

아직 제대로 수집되지 못 하는 단계인 것이고, 시스템을 정착하는 단계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5조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으로 동일하게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이것과 이전 안건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잠재적 오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것 자체로 회의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도 5호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괄적인 통계치 정도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 저도 앞서 두 분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5호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지금 4명의 의견이 다 모아진 것이
죠?
- 이것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에 4명이 이 직권
심의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위원 일부〉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7-59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의안번호 2017-60 직권심의 】

안건명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5과목)
문항별 정답률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60호 인재채용과 소관 직권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저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출제관리팀 주무관 유지열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인재채용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60호 인재채용과 소관 직권심의 건입니다.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개경쟁 임용시험 문항별 정답률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주관부서에서는 특정인에게 공개시 시험대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심의회에 직권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 위원>

○ 주무관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비공개 근거는 9조1항5호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동안 서울시 지방공무원 각 과목별, 문항별 정답률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까?

<○○○ 주무관>

○ 일괄적으로 공고형식으로 공개가 된 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답률을 이렇게 개별적인 청구로 들어온 것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향후 시험 문항별 정답률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앞으로 공개할 계획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4월 달에 청구가 들어왔는데 당시 청구인 본인이 수험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이전에 다 공개되었던 자료가 아니었고, 시험 문제와 관련된 정보이다 보니 자칫 이 수험생한테만 공개를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수험생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당시에는 비공개 결정을 했었습니다.
-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 본 결과, 시험문제와 정답을 이미 다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답률을 요구한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주는 것으로 청구인이 특별히 얻어갈 이익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닿아서 ‘향후 만약에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공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당초에 결정을 했을 때와는 판단이 달라진 것이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

서 당시에는 시험도 되게 임박한 시점에서 저희가 아직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선불리 공개를 하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비공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본 결과, 이 정보가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는 없고, 난이도만 가지고서 어떻게 시험을 유리하게 준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 위원>

- 앞으로는 공표하실 겁니까?

<○○○ 주무관>

- 현재로는 이런 정보까지 제공하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청구가 있을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라도 그에 대한 청구가 반복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일단 공통과목 위주로라도 공표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저는 아예 공표를 하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달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개할 경우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이 명백해보입니다. 당연히 학원에서 입수해서 수험생들에게 제공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예 공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표로 준비한다면 당연히 앞으로 청구해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주무관>

- 그것을 공표를 하는 것이 정보의 불균형이라든가 투명성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가령 공채과목만 하면 사실 80여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매 시험에 모든 전 과목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일일이 공표를 하는 데에는 사실 행정력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요과목 위주로 할 것인지, 공통과목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지를 폭넓게 고려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실 줄 알았는데 해당 데이터가 없다면 공개 안 해도 됩니다.

<○○○ 주무관>

- 기초데이터는 있지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정답률로서 데이터가 딱 나오는 것은 아니고, 로우데이터로 문항별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답을 추려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과목이라도 직렬별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다 쥐버리면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기도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또 직렬별로 된 것들을 평균으로 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 위원>

- 그러면 이번 청구에서 공개한다고 하면 가공을 하실 겁니까?

<○○○ 주무관>

-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의 9급, 일반전형에서, 일반 모집구분에서 달라고 본인이 딱 특정을 했습니다.

<○○○ 위원>

○ 내가 가능한 범위니까 가공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간사>

○ 고도의 가공행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도의 가공행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 위원>

○ 지금 국어 1번이 78.10%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듣기로는 1번의 보기가 1, 2, 3, 4, 5번이 있는데 각각의 퍼센티지가 이미 있고, 거기에서 정답이 5번인데 5번이 78.10이다.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거기에서 정답이 5번이니까 ‘아, 78.10이구나. 2번에 답이 3번인데 3번은 88.24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집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퍼센티지는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 주무관>

○ 네. 그리고 가령 국어 과목이 일반행정 9급에도 있지만 다른 직렬에도 국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도 일반모집, 장애인, 저소득층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문제가 됩니까?

<○○○ 주무관>

○ 문제는 같습니다.

<○○○ 위원>

○ 직렬별, 모집단위별로 정답률이 다르다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죠. 너무 로우데이터를 다 풀어줄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지금 주신 샘플자료도 만드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만든 겁니다.

<○○○ 위원>

○ 지금 국어 20번이 21%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시험문제 출제할 때 이런 유형에는 정답률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변별력이라든지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 번 문제 낼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 주무관>

○ 아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출제자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출제위원들은 정답률까지는 알지 못 하시죠.

<○○○ 위원>

○ 이미 주무부서에서 공개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한 이상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위원>

○ 공정성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간사>

○ 시험은 아주 미세한 정보라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면 안 되는 정보죠. 그래서 굳이 시험 관련 정보를 5호에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도움이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주무관>

○ 저희도 당시에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비공개했는데, 시험문제를 선정할 때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답률을 가지고 따로 문제 구성에 반영하지는 않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만 빼서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본 결과 개별적

인 청구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신 것처럼 비대칭성 이런 부분도 좀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 인재채용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네.

<○○○ 위원>

-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9급 공무원 정답률 최저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공포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얻기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 주무관>

-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서 요즘에는 다 채점을 하거든요. 수험생들이 자기가 몇 번을 선택했는지 본인의 당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모은 샘플로도 정답률을 알 수가 있죠.

<○○○ 위원>

- 학원의 수집데이터라는 얘기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표를 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 주무부서에서 공개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권심의 건 제2017-60호는 형식적으로라도 인용이 되겠죠?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 일부>

- 네.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60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소관부서 퇴장)

【 직권심의 대상 선별 결과 】

〈○○○ 위원〉

- 직권심의 결정 선별결과를 공유하는 순서입니다. 2017년 2분기 선별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2017년 2분기 비공개 결정 건 중에서 심의 완료한 건을 제외한 91건에 대해서 비공개 적정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늘 논의한 3건을 직권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건은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기존의 심의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직권심의 결과 폴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이것으로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42분 회의종료】